

제6장 경쟁

제6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필리핀의 경우, 필리핀 경쟁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, 그리고
- 나. 필리핀의 경우, 「필리핀 경쟁법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

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, 그리고
- 나. 필리핀의 경우, 「필리핀 소비자법」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

제6.2조

목적

이 장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의 유지를 통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경쟁법의 발전과 이행에 관한 양자 협력을 통하여,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.

제6.3조

기본 원칙

1.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이행한다.
2.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.
 - 가. 각 당사국이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개발, 수립, 관리 및 집행할 주권적 권리, 그리고
 - 나. 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존재하는 역량과 발전 수준의 중대한 차이

제6.4조

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¹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고 그러한 경쟁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.

¹ 그러한 행위의 예는 가) 반경쟁적 합의, 나) 지배적 지위의 남용, 그리고 다)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.

2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.
4.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.
5. 각 당사국은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한다. 각 당사국의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,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.
6.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7.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,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.
 - 가. 1) 자국의 법과 규정
 - 2)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, 또는
 - 3)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, 그리고
- 나. 위 가호1)목부터 3)목까지의 어떠한 사유에 기초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
8.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,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(가능한 경우 서면으로)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

되도록 보장한다.

9.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
10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11.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제6.5조

협력

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,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,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, 그들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, 가능한 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

나. 요청에 따라, 요청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 법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논의하는 것

다. 요청에 따라,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, 그리고

라. 요청에 따라,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

제6.6조

정보의 비밀유지

1. 이 장은 당사국의 법,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.

2.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,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.

가. 요청의 목적, 그리고

나. 요청한 정보의 사용 목적

3. 양 당사국 간 비밀 정보의 공유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다.

4.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, 그 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국은

가.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.

나.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, 요청 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.

다.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외교적 경로나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

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, 그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.

- 라.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, 인 또는 실체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. 그리고
- 마.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.

제6.7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,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안임에 동의한다.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
- 나.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
- 다.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
- 라.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,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

제6.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제9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.

제6.9조

협의

양 당사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. 그 요청에서, 요청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.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.

제6.10조

소비자 보호

1. 양 당사국은 제6.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2.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3.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4.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. 그러한 협력은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.

제6.11조

공기업

1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2.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받은 기업에 대하여,
 - 가. 어떠한 당사국도 제6.4조^{3,4}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. 그리고
 - 나.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이 특별히 자신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,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.

다만,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.

²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,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,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,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,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.

³ 이 항에도 불구하고, 각 당사국은 제6.4조제4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된 법과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.

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6.4조제4항과 제6.11조제2항가호는 정당한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기업에 대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